

부속서 VII의 부록 3
리히텐슈타인 -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공급 형태 :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특정 분야의 양허수준은 해당 서비스가 투입되는 분야 또는 달리 관련되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수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팔호안의 CPC번호는 UN 잠정중심상품분류(국제연합통계사무소, 1991)를 참조함.			
제 I 부. 수평적 양허¹⁾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제1부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양허된 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약속을 기재함. 특정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약속은 제 I 부에 기재됨.			
	1) 제한 없음.	1) 보조금, 세금감면혜택 및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유럽경제지역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럽경제지역회원국 내에 등록 사무소, 중앙 관리기관 또는 주요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3국의 자회사에게 부여된 경우는 유럽경제지역회원국 내에 제3국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점 또는 대리점에게 부여되지는 않음. 유럽경제지역회원국내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제3국의 자회사에게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중 한 국가와의 유효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보다 불리한 대우가 부여될 수 있음.	

1) 리히텐슈타인은 자국의 특수한 지리적 상황, 제한된 자원 및 작은 노동시장을 참고함. 이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은 서비스 분야를 제1부와 제2부에 기재된 유보에 대해서만 양허를 한다는 입장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제한 없음.</p> <p>3) 법인(지점포함)에 의한 상업적 주재 설립은 국민경제·(국민자본과 외국자본의 균형된 비율, 거주 인구 대비 외국인구의 균형된 비율, 거주 인구대비 경제내 총직업수의 균형비율, 균형된 지리적 상황, 분야간 및 분야내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를 이유로 한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따름.</p>	<p>2) 제한 없음. 다만, 보조금, 세금감면혜택 및 세액공제는 약속 안함.</p> <p>3) 다음 내용 외에는 제한 없음. 개인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특정 기간 동안의 이전 거주경험 및 리히텐슈타인 영구거주 조건에 따름. 법인의 상업적 주재 설립(지점포함)은 다음의 조건을 따름: 최소 한명의 관리자는 특정 기간동안의 이전 거주경험 및 리히텐슈타인 영구거주조건을 따름. 관리자(법인을 경영하고 대표할 권한이 있는)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특정 기간동안의 이전 거주경험이 있어야 함. 일반 및 유한합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법인)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또한, 직원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일정 기간동안의 이전 거주경험이 있어야 함. 리히텐슈타인 회사법은 합작회사가 등록 지분 이전의 배제 또는 제한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럽경제지역회원국에 등록 사무소, 중앙관리기관 또는 주요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에 부여되는 대우는 유럽경제지역회원국에 설립된 제3국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게 부여되지 않음.</p> <p>유럽경제지역내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제3국기업의 자회사에게는 유럽경제지역회원국 중 한 국가와의 유효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보다 불리한 대우가 부여될 수 있음.</p> <p>모든 부동산 취득은 허가를 조건으로 함. 그러한 허가는 생활과 사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증명된 조건을 제시하고 소정의 거주기간이 완료된 상황에서만 주어짐. 비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다음의 I항에 정의된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이하 '자')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치, 그리고 다음의 제한 및 조건과 내국민 대우란에 기재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리히텐슈타인 입국 및 체류는 허가(거주허가서 및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함. 허가는 할당된 노동허가의 전체 수량을 정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부여됨. 다음 I항에서 정의된 필수요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 리히텐슈타인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기간 제한이 없거나 또는 연장 가능한 거주허가를 보유하고 리히텐슈타인에 체류 또는 입국하는 자는 일시체류 또는 일시고용을 위해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거나 입국하는 자로 간주되지 않음.</p>	<p>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의 범주에 대한 조치 그리고, 다음의 제한과 조건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 지점 및 활동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작업조건(급여, 근무시간 등 관련), 전문직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사회보장 및 공공연금계획의 법적 체계에 관한 규정(적격 기간, 거주요건 등 관련) 및 그 밖의 이민·입국·체류 및 노동관련 법률 규정. 이러한 자를 고용한 기업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과 협력해야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 <u>특정 사업 또는 회사 내에서 리히텐슈타인으로 전근된 필수 요인(기업내 전근자)</u></p> <p>리히텐슈타인에 설립된 지점이나 자회사를 통해 리히텐슈타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사업체 또는 회사(이하 기업)의 고용인이며, 입국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써 다음에 자세히 정의된 자를 필수요인으로 간주함:</p> <p>a) <u>임원 및 고위관리자</u>: 기업 또는 그 기업내 한 부서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기업의 상급 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p> <p>임원 및 고위관리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음.</p> <p>b) <u>전문가</u>: 기업내에서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또는 기업 경영 분야에서 고급수준의 전문적 지식으로 인하여 특정 서비스 공급에 필수적인 고도의 자격을 갖춘 자</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 II 부.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서비스			
- 자국법 및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리히텐슈 타인법에 대한 자문 제외) (CPC 8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및 장부정리 서비스			
- 회계 및 감사서비스 (CPC 86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49%의 외국인 지분한도. 외국인의 의결권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운영 및 대표의 권한이 부여된 이사 회 중 적어도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 텐슈타인 시민이어야 하며, 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법인을 위하여 전임으로 근 무하여야 함. 이사회의 과반수는 감사로서 일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조세환급을 제외한 장부정리 서비스 (CPC 862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세무서비스 (CPC 86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49%의 외국인 지분한도. 외국인 의결권은 49%를 초과 할 수 없음. 운영 및 대표의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 중 적어도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어야 하며, 감사 또는 관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법인을 위하여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d) 건축서비스 (CPC 86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I부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에는 리히텐슈타인 국적 필요 ²⁾ (그러나, 외국인 조사자는 인가받은 리히텐슈타인 조사자의 책임 하에 작업 가능) 2) 제한 없음.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에는 리히텐슈타인 국적 필요(그러나, 외국인 조사자는 인가받은 리히텐슈타인 조사자의 책임 하에 작업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에는 리히텐슈타인 국적 필요 (그러나 외국인 조사자는 인가받은 리히텐슈타인 조사자의 책임 하에 작업 가능)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조경서 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공적 목적을 위한 조사”는 토지대장 활동 및 관련 활동을 말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CPC 841-845, 849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연구개발서비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 제외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종합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는 임대 서비스			
c) 기타운송 장비 관련 (CPC 83101 + 83102 + 831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기계 및 장비 관 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기타사업 서비스 a) 광고서비스 - 광고서비스(다이렉트 메일 광고 포함), 옥외 광고 제 외,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 품에 대한 광고 제외, 의약 품 · 알코올 · 담배 · 중독성 물질 · 폭발물 · 무기와 탄약 에 대한 광고 제외 (CPC 8711의 일부 + 871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컨설팅관련 서비스 (CPC 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림 및 수렵업 관련 서비스 - 농림 및 수렵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서비스 - 어업관련 자문서비스 (CPC 88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관련 서비스 - 시굴, 측량, 탐사 및 개발을 제외한 광업관련 서비스 (CPC 883의 일부 + 511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 제조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 CPC 88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과학, 기술관련 컨설팅 서비스			
- 시굴, 조사, 탐사, 벌채 를 제외한 과학기술 컨설팅 관련외 (CPC 867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 유지 · 수선(선팩, 항공기 또는 다른 운송 장비 제외) (CPC 633 + CPC 8861-8866)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청소 서비스 -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단 CPC 87409 제외)	1)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에 대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에 대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인쇄 및 출판 (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C.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는 방송 ³⁾ 을 제외한 소리, 데이터, 이미지 그리고 이들간의 조합 등 전자기적 신호의 전달임			
기본통신 서비스			
a) 음성전화서비스 (CPC 75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방송은 일반 공중에게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의 분배에 필요한 중단됨이 없는 전달 네트워크로 정의되며, 사업자간의 기여회선은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 (CPC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텔레스 서비스 (CPC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전신서비스 (CPC 75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 + 75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전용회선 서비스 (CPC 7522 +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부가서비스</u>			
(h) 전자메일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음성메일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j) 온라인 정보검색 및 DB 재생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k) 전자적 데이터교환 (EDI)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l) 고도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n) 온라인정보/ 데이터 처리 (CPC 84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기타			
- 비디오텍스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음성전달을 제외한 부가 폐이징 서비스 스를 포함한 허가 받은 무선망을 기 초로 제공되는 부 가통신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4. 유통서비스</u>			
<u>A. 위탁중개인 서비스</u>			
- 수입허가 대상인 품목, 의약품, 유독성 물질, 폭발물, 무기류, 탄약 및 귀금속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위탁중개 서비스 (CPC 621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B. 도매서비스</u>			
- 수입허가 대상인 품목, 의약품, 유독성 물질, 폭발물, 무기류, 탄약 및 귀금속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도매 서비스 (CPC 62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소매서비스</u>			
- 수입허가 대상인 품목, 의약품, 유독성 물질, 폭발물, 무기류, 탄약 및 귀금속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소매서비스 이동 판매업소를 통한 소매업도 제외 (CPC 631의 일부 + CPC 632의 일부 + CPC 6111의 일부 + CPC 6113의 일부 + CPC 6121의 일부) ⁴⁾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4) 이 하위분야는 자동차 및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모든 유통서비스를 포함함(CPC 6111 + 6113 +6121)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랜차이징 (CPC 8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교육서비스			
사립교육서비스			
A. 의무교육서비스 (초등 및 전기중등) (CPC 921의 일부 + CPC 922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리히텐슈타인법에 따라 법인형태로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비의무교육서비스 (후기 중등) (CPC 92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리히텐슈타인법에 따라 법인형태로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국내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국내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서비스 지자체, 리히텐슈타인 정부 또는 계약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것에 관계없이 공공시설 제외			
A. 하수 서비스 (CPC 940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C. 방역 및 기타유사 서비스 (CPC 9403)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환경서비스 (CPC 9404 + 9405 + 9406 + CPC 9409의 일부)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7. 금융서비스

은행, 증권, 보험서비스에 대한 양허는 금융서비스 양해각서(이하 양해)와 제I부(수평적 양허)와 다음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름. 다음의 양허는 비거주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영업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데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함.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리히텐슈타인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의 설립이 요구됨 2) 제한 없음. 3) 리히텐슈타인에 법인으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공공 유한회사 또는 상호협력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제3국 보험업자가 리히텐슈타인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대리인 또는 지점 사무소가 리히텐슈타인에 설립되어야 함. 제3국의 보험업자는 본국의 법에 의해 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회사이어야 함. 건강보험 공급업자가 기본건강보험체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제휴 또는 재단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이사회와 경영진 중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해야 함. 그들은 회사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지점 또는 대리의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지명 허가를 받은 일반 대표자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고 그 회사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으면 충분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제외)	<p>15) 리히텐슈타인에서의 관행에 따라 뮤추얼펀드(집단적 투자)는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어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은행과 금융회사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과 금융회사는 리히텐슈타인 은행과 회사법에 의해 다음의 면허요건을 따라야 함: 49%의 외국인 지분한도 외국인 의결권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운영 및 대표의 권한이 부여된 경영진 중 적어도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어야 하며, 감사 또는 관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법인을 위해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금은 오직 리히텐슈타인 시민에게만 부여되며, 국내은행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함.</p> <p>2)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금은 오직 리히텐슈타인 시민에게만 부여되며, 국내은행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함.</p> <p>3) 이사회와 경영진 중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해야 함. 그들은 회사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는 회사의 이름, 스위스 국가은행에의 의무, 그리고 본국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면허요건을 충족해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5) “양해”의 B.3절에 명시된 거래뿐만이 아니라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거래의 모든 범위를 포함함(보험 제외).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u>			
<u>A.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 (케이터링: 음식 조달서비스 포함)</u> (CPC 641-CPC643)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다만, 케이터링(CPC 6423)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다만, 케이터링(CPC 6423)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B. 여행업 및 투어 오퍼레이터</u> (CPC 74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C. 관광 가이드 서비스</u> (CPC 7472)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0.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u>			
<u>B. 뉴스제공업</u> (CPC 9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u> -스포츠 서비스 (CPC 96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1. 운송서비스</u> <u>F. 도로운송 서비스</u> a) 여객운송 - 정기, “비개방형”관광만 (CPC 712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부정기 단, 공차 진입, 카보타지, 및 택시 서비스 스 제외 (CPC 712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승무원이 포함된 승합차 임대 (CPC 71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승합차 유지 및 수선 (CPC 6112 + 8867)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H. 운송보조서비스</u>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창고 서비스 (CPC 742)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화물운송대리 서비스 (CPC 74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부수 운송 서비스, 단지방 수령 및 배달 제외 (CPC 74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